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13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김도읍·조지연·구자근

권영세 · 김형동 · 백종헌

장동혁 • 인요한 • 신동욱

정점식 · 유상범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에 기인한 경기침체와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여파로 한계기업과 재정적 위기를 맞은 개인채무자 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오늘날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 한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가 되었음.

위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도산사건의 증가에 대응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한편,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효과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 채무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바, 이를 위해 법원이 도산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국적인 도산절차 업무에 통일성을 기하여 도산절차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왔음.

도산절차의 합리적·효율적·통일적인 운영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도산사 건과 관련한 개인채무자와 한계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과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도산제도의 합리적인 운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위와 같이 체계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나아가, 입법기관, 금융당국 등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경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도산 관련 정책과 각종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법원이 축적한 도산사건 자료가 좋은 참고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이에 도산절차의 합리적·효율적·통일적인 운영 방안 마련 및 도산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원이 각도산절차에 적합한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8조의2(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 산사건(이하 이 조에서 "도산사건"이라고 한다) 처리와 관련된 전산 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② 도산사건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 의를 거쳐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승인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제28조의2(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회생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이하 이조에서 "도산사건"이라고 한다) 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도산사건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를 거쳐 전산정보자료를

<u>된다.</u>

④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및 그 밖에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